

# 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
임설준	951215-1183616

## 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월별	보수월액(고지금액)		소득월액(납부금액)	
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0	0	0	0
02월	0	0	0	0
03월	0	0	0	0
04월	0	0	0	0
05월	0	0	0	0
06월	0	0	0	0
07월	0	0	0	0
08월	0	0	0	0
09월	0	0	0	0
10월	0	0	0	0
11월	79,170	10,140	0	0
12월	79,170	10,140	0	0
연말정산	0	0		
합계	158,340	20,280	0	0
총합계				178,620

-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일련번호 : 20240130-69333462

-1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 : 기본내역 [고용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
임설준	951215-1183616

## ■ 고용보험료 고지내역

(단위:원)

월별	고지금액
01월	0
02월	0
03월	0
04월	0
05월	0
06월	0
07월	0
08월	0
09월	0
10월	18,150
11월	20,090
12월	20,090
합계	58,330

- 고지금액 :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실제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급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건설업, 벌목업 사업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일련번호 : 20240130-69333462

-2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민등록번호
임설준	951215-1183616

## 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

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0	0
02월	0	0
03월	0	0
04월	0	0
05월	0	0
06월	0	0
07월	0	0
08월	0	0
09월	0	0
10월	0	0
11월	100,480	0
12월	100,48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험료 납부금액		0
실업크레딧 납부금액		0
합계	200,960	0
총합계		200,960

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
2. 지역가입자 · 추납보험료 ·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일련번호 : 20240130-69333462

-3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민등록번호
임설준	951215-1183616

#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종류	상 호	보험종류	납입금액 계	
	사업자번호	증권번호		
	종피보험자1(수의자)	종피보험자2(수의자)	종피보험자3(수의자)	
보장성	삼성생명보험 ( 주 )	무)New을인원암보험	187,152	
	104-81-26688	00041000011224900	951215-*****	임설준
보장성	삼성생명보험 ( 주 )	무)건강종신보험	978,312	
	104-81-26688	00041000011223793	951215-*****	임설준
보장성	삼성생명보험 ( 주 )	무)통합스마트변액유니버설CI종	709,970	
	104-81-26688	00005542662110019	951215-*****	임설준
인별합계금액			1,875,434	

- 공제 대상 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- 공제 한도 : 100만원

일련번호 : 20240130-69333462

-4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 ■ 환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
임설준	951215-1183616

## ■ 의료비 지출내역

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호	종류	지출금액 계
130-46-41222	CNP 차앤박피부과 (부천점)	일반	5,1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5,1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5,100

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
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2. 공제 한도 : 본인 · 장애인 · 65세 이상 자 ·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· 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
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
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일련번호 : 20240130-69333462

-5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
임설준	951215-1183616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2023년 합계	5,254,487	0	1,450	121,100	5,377,037
1월~3월	1,112,505	0	0	16,100	1,128,605
4월~12월	4,141,982	0	1,450	105,000	4,248,432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업자번호	상호	종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202-81-45602	삼성카드주식회사	일반	5,254,487
신용카드	202-81-45602	삼성카드주식회사	전통시장	0
신용카드	202-81-45602	삼성카드주식회사	대중교통	1,450
신용카드	202-81-45602	삼성카드주식회사	도서공연등	121,100
인별합계금액				5,377,037

-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업자, 전통시장사업자, 대중교통이용자, 도서공연등 사용자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업자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자에 포함)  
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40130-69333462

-6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 
소득·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륙 번 호
임설준	951215-1183616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3년 합계	3,230,550	3,000	0	0	3,233,550
1월~3월	811,890	0	0	0	811,890
4월~12월	2,418,660	3,000	0	0	2,421,660

#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업자 번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3,077,050
직불카드 등	202-81-48079	신한카드 주식회사	전통시장	3,000
직불카드 등	527-88-00686	주식회사 카카오페이	일반	153,500
인별합계금액				
		3,233,550	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업분, 전통시장사업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업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 
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240130-69333462

-7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 
소득·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023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
임설준	951215-1183616

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(단위:원)

구분	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주택임차료 거래	합계금액
2023년 합계	731,115	64,200	0	0	0	795,315
1월~3월	104,062	0	0	0	0	104,062
4월~12월	627,053	64,200	0	0	0	691,253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 
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 
사용분에 포함)  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흠팩스(흡택스)>  
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>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/발급거부 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 
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일련번호 : 20240130-69333462

-8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 
소득·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민등록번호
임설준	951215-1183616

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종류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		공제대상금액
		01월	02월	03월	04월	05월	06월	
		05월	06월	07월	08월	09월	10월	
		09월	10월	11월	12월	10월	11월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45,762	18,400	39,900	96,900	731,115	731,115	731,115
		155,777	0	55,000	26,676			
		0	0	29,000	263,700			
현금영수증	전통시장거래	0	0	0	0	64,200	64,200	64,200
		0	0	0	0			
		0	0	0	64,200		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 
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 
사용분에 포함)
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흠택스(흡택스)>  
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>현금영수증신용카드미발급/발급거부 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 
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2.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주택임차료(월세) 거래분은 일반거래금액으로 계산함

일련번호 : 20240130-69333462

-9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 
소득·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# 2023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취급기관별)내역 [주택마련저축]

(조회기간 : 2023년 01 ~ 12월)

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민등록번호
임설준	951215-1183616

### ■ 주택마련저축 납입내역

(단위:원)

취급기관 (사업자번호)	계좌번호	저축구분	저축명	가입일자	납입금액 계
(주)신한은행 (202-81-02637)	223118188924	주택청약종합저축	주택청약종합저축	2023-11-18	200,000
합계					

- 공제대상 :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,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(청약저축, 주택청약저축은 240만원 한도,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)의 40%(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)  
※ 2014.12.31.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8년 납입분부터 공제대상 아님  
※ '09.12.31.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(가입 후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)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
※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 
※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. 단, 주택 당첨으로 인하여 해지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
- 공제한도 :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

일련번호 : 20240130-69333462

-10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